

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2. 18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2월 7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2월 11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2. 18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 성 린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의 근거법규인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제18조(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) 내지 21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,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- 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

- 관련 근거법규 삭제에 따른 조례 폐지로 특이사항 없음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